

평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80호
----------	-------

제출년월일 : 2016. .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도로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따라 도로점용 감면대상 및 감면율의 세부적인 처리기준을 보완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고 점용료 부과 및 징수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점용료의 조정산식 변경 (안 제5조)

- 증가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던 점용료 조정산식을 폐지하고, 일괄 산식 적용 (전년대비 100분의 10이상 증가한 경우 일괄적으로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
- 기존에 적용하던 [별표 2 조정산식]은 삭제

나. 점용료 등의 감면기준의 세부적·구체적 변경 (안 제6조)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의 종류 명시 (「도로법 시행규칙」에 따른 법인)

다. 점용료 감면대상 신설 (안 제6조)

- 「주택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에 출입하는 통행로로 이용하는 경우 점용료의 1/2을 감액
- 사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경우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조항 신설

라. 점용료 산정기준 변경 (안 제4조와 관련하여 별표 1 개정)

- 주유소, 주차장 등의 진출입로로 점용할 경우 건축물의 층수에 따라 세분화하였던 점용료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적용요율을 낮추어 점용료부담 경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6.7.8.~7.29.) 결과, 제출의견 없음
- 2)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3) 규제심사 : 행정규제 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평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해당 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조정산식에 따라 계산한”을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비영리사업”을 “「도로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를 “「도로법 시행규칙」 제3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면제한다”를 “면제하고 「주택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⑧ 사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가 그 부지를 점용허가받은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점용료 총액이 기부채납한 토지의 가액이 될 때까지 전액 면제하되, 기부채납으로 용적률이 상향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 (제4조 관련)

(금액의 단위: 원)

점용물의 종류		기준 단위		점용료		
		점용 단위	기간 단위	소재지		
1.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	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850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250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4,100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하수도관	길이 1미터	1년	지름 0.1m 이하	200
		가스관			송유관	지름 0.1m 초과 0.2m 이하
	전기관	전기통신관			지름 0.2m 초과 0.4m 이하	850
		송열관			농업용수관	지름 0.4m 초과 0.6m 이하
	직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직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6m 초과 0.8m 이하	1,650
					지름 0.8m 초과 1.0m 이하	2,050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1.0m 초과 2.0m 이하	3,100
					지름 2.0m 초과 3.0m 이하	5,200
					지름 3.0m 초과	7,250
					지름 0.1m 이하	300
					지름 0.1m 초과 0.2m 이하	600
					지름 0.2m 초과 0.4m 이하	1,250
					지름 0.4m 초과 0.6m 이하	1,850
					지름 0.6m 초과 0.8m 이하	2,500
	지름 0.8m 초과 1.0m 이하	3,100				
	지름 1.0m 초과 2.0m 이하	4,600				
	지름 2.0m 초과 3.0m 이하	7,750				
	지름 3.0m 초과	10,850				
3.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	건축물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진입로·출입로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그 밖의 것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4.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5. 지하상가·지하실(「건축법」 제2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7을 곱한 금액
		3층 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그 밖의 것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6. 간판(돌출간판을 제외한다), 시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간판(돌출간판은 제외한다)	일시 설치한 것 (1개월 미만 점용)	표시면적 1제곱미터	1일	150
		그 밖의 것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20,700
	돌출간판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9,900
	시설안내표지		1개	1년	17,250
	현수막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	표시면적 1제곱미터	1일	50
		그 밖의 용도			150
	아치	도로횡단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41,400
		그 밖의 것			20,700

7. 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8.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일시 점용한 것	점용면적	1일	150
	그 밖의 것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를 위한 시설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주택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그 밖의 것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비고

1.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年額)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간판 및 사설안내표지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4.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예: 1,950원→1,900원).
5.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둘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지름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6.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 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용물의 외접하

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7.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8. 점용료가 다른 둘 이상의 점용물을 하나의 복합점용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 따라 각각 점용료를 산정한다. 이 경우 점용자가 다를 때에는 점용자별로 부과하여야 한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4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u>해당 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조정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u></p>	<p>제5조(점용료의 조정) ----- ----- ----- <u>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u></p>
<p>제6조(점용료의 감면) ① 도로의 점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u>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u></p> <p>②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서 <u>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u></p> <p>③ (생 략)</p> <p>④ 도로의 점용이 「주택법」 제2</p>	<p>제6조(점용료의 감면) ① ----- ----- ----- 「<u>도로법 시행규칙</u>」 제35조에 따른 법인이 시행하는 <u>비영리사업--.</u></p> <p>② ----- ----- ----- 「<u>도로법 시행규칙</u>」 제3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u>점용료를 감면한다.</u></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p>

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⑤ ~ ⑦ (생략)

<신설>

--- 면제하고 「주택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⑤ ~ ⑦ (현행과 같음)

⑧ 사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가 그 부지를 점용허가받은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점용료 총액이 기부채납한 토지의 가액이 될 때까지 전액 면제하되, 기부채납으로 용적률이 상향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관계법령 발췌

□ 도로법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로법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도로점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제9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3. 그 밖에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도로점용을 종료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생략

④ 점용료의 산정기준,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반환 방법 등 점용료의 징수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제23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농어촌도로 정비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도로의 점용) ① 도로의 구역에서 인공구조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설치·개축·변경·제거하거나 쌓아두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인공구조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도로의 점용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점용료의 징수) ① 군수는 제18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군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3조제5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한 비용발생 요인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연락처	(033) 330 - 2490